

20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
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20. 4. 6.

홍 성 군 수



1. 제 목 :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
2. 근거법규 : 가.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나. 국세기본법 제11조
다. 지방세기본법 제33조
라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3. 공고기간 : 2020. 4. 6. ~ 2020. 4. 21. (15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“불임”
5.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: 홍성군 환경과(☎041-630-1455)
6.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